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352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정부안) .....  | 3  |
| 2.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 (정부안) ..... | 7  |
| 3.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 (정부안) .....   | 10 |
| 4.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 (정부안) .....  | 12 |



## I. 개요

### 1. 정부안(의안번호 제3524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9. 2.
- (3) 회 부 일 : 2024. 9. 3.

#### 나.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안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정부안)

| 현 행                                                                                                                                                | 개정안                                                                                                                                                                                                                                           |
|----------------------------------------------------------------------------------------------------------------------------------------------------|-----------------------------------------------------------------------------------------------------------------------------------------------------------------------------------------------------------------------------------------------|
| <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9②)<br>○ (원칙)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br>○ (예외)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br>○ <추 가> | <input type="checkbox"/>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br>○ (현행과 같음)<br>○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br>○ *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확정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br>○ 시행일: 2025. 1. 1.<br>○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4)

☐ 개정안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스스로 세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예외사유에 추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확대를 통해 수입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은 협정관세<sup>1)</sup>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

1) 「FTA관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계약상대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음.<sup>2)3)</sup> 이에 더해 현행법은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특례 규정<sup>4)</sup>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등의<sup>5)</sup> 사유로 수입자 스스로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때에도 사후적용신청을 허용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특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음.

## 2) 「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3) 이는 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①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③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중 신청요건의 충족을 위한 절차임.

## 4) 「FTA관세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5)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 등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허용하고 있음.<sup>6)</sup> 이는 사후적인 신청에 의해 협정관세를 적용하더라도 그 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무시할 정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자가 해외에 소재하여 소통 등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의 현실을 감안한 것임.

개정안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을 이유로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법 제9조제2항과의 형평성 제고 및 협정관세 사후적용제도의 적용 가능 경우를 확대<sup>7)</sup>하여 수입자의 편의가 제고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한-아세안 FTA는 협정관세 사후신청 적용 제도에 관한 조항이 미도입되어 있으나, 아세안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사후 적용신청이 가능한 상황임.

---

6) 「FTA관세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7) 대법원 2019.12.24. 자 2019두51994판결은 「FTA특례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의 수리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다가 경정처분 등 어떠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그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FTA협정 별 협정관세 사후신청 제도 도입 현황 >

---

- [도입] 칠레, 인도, 미국, EU, 페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 [조건부 도입] 싱가포르, EFTA, 중국은 수입신고 시 특혜 관세 신청 의도를 밝혀야만 특혜관세 사후 신청 가능
  - [미도입도입] 한- 아세안 FTA는 특혜관세 사후신청 조항 미도입\*
    - \* 다만,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사후 신청 가능
- [우리나라, 아세안 7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

## 2.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 (정부안)

| 현 행                                                                                                                                                                                                                                                                                                                                                                          | 개정안                                                                                                                                                        |
|------------------------------------------------------------------------------------------------------------------------------------------------------------------------------------------------------------------------------------------------------------------------------------------------------------------------------------------------------------------------------|------------------------------------------------------------------------------------------------------------------------------------------------------------|
| <input type="checkbox"/>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31①)<br>*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 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br>○ (자격)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br>○ (방법) 수입신고 전(前)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 신청<br>○ (대상) 대통령령으로 규정<br>- 물품·재료의 원산지<br>- 물품·재료의 품목분류·가격·원가<br>- 부가가치의 산정<br>- 관세의 환급·감면<br>- 물품의 원산지 표시<br>-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br>* <추 가><br>-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br>○ (예외)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input type="checkbox"/> 신청 대상 추가 및 신청 불가 사유 삭제<br>○ (현행과 같음)<br>* 시행령등에서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할 예정<br>- (현행과 같음)<br>○ <삭 제><br>○ 시행일: 2025. 1. 1. |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4)

☐ 개정안은 원산지 사전심사제도가 신청 불가능한 사항은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의 편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수입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

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등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sup>8)</sup> 이는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의 요건 중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일 것’이라는 요건의 판별을 위해 해당물품의 수입 신고전 대통령령에 따르는 의문사항<sup>9)</sup>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는 제도임. 수입업자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관세혜택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어 수입 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무역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동법에 사전심사의 예외로서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FTA를 포함하여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원산지 사전 심사를 허용하는

#### 8) 「FTA관세법」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9) 「FTA관세법 시행령」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우, 사전심사 제도 활용률이 높아지며 수입자의 편의가 제고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특히 ‘스파게티볼 효과’<sup>10)</sup>로 FTA별 원산지 규정등도 복잡화되는 추세에 있어 무역업자는 상품이 FTA를 통해 수입될 때 어떠한 원산지 평가 기준을 따르는지 정확히 판단해야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참고로 WTO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이하 “TFA”) 제도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물품의 관세 분류와 원산지에 대해 사전 심사(Advance Rulings)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관세 평가·면제 또는 경감 조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이행하도록 권장받고 있음.<sup>11)12)</sup>

---

10)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법체계,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본연의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것

11) WCO, Advance Ruling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Members are required to issue advance rulings regarding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the origin of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Members are also encouraged to issue advance rulings for other areas such as Customs valuation and requirements for relief 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12)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국내법상 이를 도입하는 것이 문제시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FTA상의 의무 위반은 ‘비차별 원칙 위반’ 및 TFA 제도등으로 보장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기타 무역장벽(Non-Tariff Barrier) 요소가 있는지를 판별함. 동 사전심사제도는 무역원활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FTA 체결 시 제도가 미도입되었으나 동법 개정을 통해 이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FTA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3.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 (정부안)

| 현 행                                                                                                                                                                                                                | 개정안                                                                                                                                               |
|--------------------------------------------------------------------------------------------------------------------------------------------------------------------------------------------------------------------|---------------------------------------------------------------------------------------------------------------------------------------------------|
|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32①)<br>*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부<br>○ 관세청장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 *가 있는 경우 변경<br>* 사실의 변경, 협정 개정으로 원산지 기준이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 <input type="checkbox"/> 내용 변경 대상 확대<br>○ 관세청장이 <u>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 가 있는 경우 변경<br>※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내용변경 가능<br>○ 시행일: 2025. 1. 1. |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4)

☐ 개정안은 협정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수입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등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3)</sup> 이를 통해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 될 경우 수입자는 내용

#### 13) 「FTA관세법 시행령」

**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제37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FTA관세법 시행령」

**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⑥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변경에 미리 조치할 수 있게 되어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과세당국입장에서는 세관과 수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입절차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황 등이 변경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내용이 변경하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협정과 관계 없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협정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근거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수입업자들의 편의가 제고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협정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사전심사서 내용이 변경 가능하여 시행령상 현행 규정에 비해 수입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WTO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등의 원칙<sup>14)</sup>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음. 따라서 사전심사 내용 변경 사유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4) WTO, 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Predictability: through binding and transparency  
Sometimes, promising not to raise a trade barrier can be as important as lowering one, because the promise gives businesses a clearer view of their future opportunities. With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vestment is encouraged, jobs are created and consumers can fully enjoy the benefits of competition – choice and lower prices.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s an attempt by governments to make the business environment stable and predictable.

#### 4.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 (정부안)

| 현 행                                                                                                                                                                                                   | 개정안                                                                                                                                                                                                                                |
|-------------------------------------------------------------------------------------------------------------------------------------------------------------------------------------------------------|------------------------------------------------------------------------------------------------------------------------------------------------------------------------------------------------------------------------------------|
| <input type="checkbox"/> FTA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36①)<br><input type="checkbox"/> (원칙) 부족세액의 10%<br><input type="checkbox"/>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br>* ①원산지 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br>②원산지증빙서류 파기<br>③기타부정한 행위 | <input type="checkbox"/> 내용 변경 대상 확대<br><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br><input type="checkbox"/> 부족세액의 40% → 60%<br><br><input type="checkbox"/> 시행일: 2025. 1. 1.<br><input type="checkbox"/> 적용례: 2025년 1월 1일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4)

☐ 개정안은 FTA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국세기본법」상 내국세 역외거래 가산세율 수준인 부족세액의 60%로 상향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 특정 비율로 세금을 가산하여 세금을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sup>15)</sup> 그중 수입업자의 원산지 증명서

##### 15) 「FTA 관세법」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위조 또는 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임.

#### 과소신고 시 가산세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A) + 납부지연가산세(B)

※ 신고불성실가산세(A)는 과소신고 등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를 제재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B)는 납부기한이 지나 관세를 납부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회수하기 위한 성격이 있음.

□ 가산세율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40%의 가산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0%의 가산세율을 규정하고 있음.<sup>16)</sup> 그러나 현행 「FTA 관세법」은 부정행위가 수반되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40%로 규정하고 있어 협정관세와 내국세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상이한 상황임. 특히 협정관세의 과세대상 거래인 ‘수입’은 국세기본법상 ‘역외거래’<sup>17)</sup>에 해당하므로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가산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17)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세율을 60%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어보임.

- 개정안과 같이 내국세의 역외거래 수준으로 「FTA 관세법」상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는 경우 납세자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독려하여 자발적 법규준수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세기본법」 등 기타 법률의 역외거래와 통일된 수준의 가산세율로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8)

문 의 처

02)6788-5158

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18) 「관세법」상 부정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도 부족세액의 60%로 상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안)도 2024.9.2. 국회에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중임.